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2020.06.11.)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용 섭)

#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5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0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6월 1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통원예과장)

#### 가.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평가(안 제5조 ~ 제7조)
-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군수와 국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직무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6조 상 “식생활 교육 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수립시행의무 규정”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입법례로는 강원도 내 12개 시·군으로 확인되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부.

##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 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④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군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⑥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장, 복지과장, 산림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원예과장, 평창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교육평창네트워크 상임대표
4. 농업인 단체 추천인
5.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요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장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교류, 지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